

[WABAMi FAIR 참가 규정]

본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약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1. 전시회 참가 규정

제 1조 용어의 정의

- 가. 전시회라 함은 에이민, 와바미가 주관하는 '와바미페어', '와바미세미나'를 의미한다.
- 나. '참가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최자의 승인을 받고, 참가비를 납입하여 참가를 확정된 기업 및 유관기업을 말한다.
- 다. '주관사'라 함은 인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15, 명동프라자 소재 에이민, 와바미를 말한다.
- 라. '전시품'이라 함은 참가자가 전시회에 출품하는 제품을 말한다.
- 마. '참가신청서'라 함은 전시회 참가를 목적으로 주관사에게 온라인 혹은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를 말한다.

제 2조 참가 신청 및 납입

- 가. 본 전시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며, 이를 주관사가 승인함으로써 본 전시회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단,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전시품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사는 참가자의 참가 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나. 참가자는 계약 성립 후 전체 참가비 중 부스비의 전액을 주관사가 별도로 통지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 최종 참가권한을 획득한다.
- ※ 만약 납입과 관련하여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관사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 때 주관사는 판단에 참고할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검토 후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제 3조 계약의 해지

- 가. 참가자의 사정에 의한 참가약정의 해지(참가취소)는 주관사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며 승인여부와 무관하게 다음과 같이 해지의사 표시 시점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고, 주관사는 해당 금액을 이미 납입된 참가비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 후 부족한 위약금은 참가약정 해지 후 1주일 이내에 참가자가 주관사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① 전시회 개최 60일 전까지 : 총 참가비의 50%
- ② 전시회 개최 30일 전까지 : 총 참가비의 70%
- ③ 전시회 개최 29일 전까지 : 총 참가비의 100%

- 나. 위 '가'항에서 발생한 계약해지 위약금은 전시회 참가 신청 이후에 발생하며, 전시회 일정과 해지의사 표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일정 비율의 위약금을 납입해야 한다.
- 다. '가'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약금의 경우, 차기 행사 참가비로 유예가 일체 불가하며 위약금 납입을 거부하는 경우 향후 1년간 전시회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 라. 주관사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및 기타 주관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않고 참가자는 주관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4조 전시부스 배정

- 가. 주관사는 전시품목, 신청접수의 순서, 신청면적, 공간조화, 관람효율 등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관사의 기본 계획에 의거하여 전시부스를 배정한다.
- 나. 주관사는 전시회 장치기간(준비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참가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 및 면적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관사의 재량에 의하되, 참가자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며 참가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5조 전시부스 배정

- 가.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기재하여 사전에 신고한 전시품을 전시해야 한다.
- 나. 주관사는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전시품 및 장치물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
- 다. 주관사는 참가자의 전시품 중 전시회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이 있을 경우, 이를 참가자에게 통지하고 그 반출을 명하거나 부스를 철거할 수 있다.
- 라. 위 '다'항의 경우 주관사는 해당 참가자에 대해 향후 주관사가 개최하는 전시회 참가를 배제할 수 있다.

제 6조 전시부스 양도 금지

- 가. 참가자는 주관사의 사전 승인 없이 배정된 전시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단, 참가자의 모기업, 계열사, 대리점 등의 경우 주관사는 기업간 관계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 후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승인 후 함께 참가하는 자(법인 또는 사업자, 개인) 또한 별도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주관사는 부스를 철거함과 동시에 본 전시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나. 참가자는 부스 내에 참가신청이 되지 않은 업체의 홍보물 또는 전시품을 전시할 수 없다. 만일 사전 참가신청이 되지 않은 타 업체 홍보물, 카탈로그, 전시품이 부스 내 전시되어 있을 경우 주관사는 이를 부스 양도로 간주하고 참가자의 부스를 철거함과 동시에 향후 본 전시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다. 위 '가'항 내지 '나'항에 해당하는 경우 납입한 참가비는 반환되지 않으며, 참가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7조 배상의 책임

- 가. 주관사는 전시 기간 및 부스 설치/철거 기간동안 전시장 보안을 위해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시 기간이 1일 이내일 경우에는 이에 전시회 대관 업체와 협의하여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전시품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최종

적인 책임은 해당 참가자에게 있으며(주관사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도난, 파손 등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나. 참가자는 전시기간 및 부스 설치/철거기간 동안 부스 내 발생한 모든 제반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주관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관사, 전시장,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참가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 라. 참가자는 전시기간 및 설치/철거 기간동안 전시품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손해, 손실 등에 대하여 보험 가입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상주 인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및 전시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마. 주관사는 주관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방화, 절도, 파손 등에 대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바. 전시 제품 또는 서비스의 하자 기타 전시에 의하여 발생한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등 모든 민형사행정상 법적 책임에 대하여 주관사는 책임지지 않고, 전적으로 참가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다만, 전시장 자체의 하자 등 주관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가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 만일 제3자가 전시로 인한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등 민형사행정상 법적 책임을 주관사에게 청구하는 경우 참가자는 민원처리, 소송 기타 법적 대응 등 주관사를 면책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 제3자의 청구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주관사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참가자는 즉시 그 비용을 주관사에게 보상해주어야 한다.

제 8조 시설물 관리 및 원상복구

- 가. 참가자는 부스 설치, 철거 기간 전시장 대여자 및 주관사가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파손할 시 주관사는 원상복구비용 등 복구에 사용된 모든 비용을 참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나. 참가자는 전시 종료 후 부스 장치 철거 시, 전시 공간을 공사시점의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다. 주관사는 참가자의 원상복구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경우 참가자에게 철거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완료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만약 참가자가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관사가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한 후 그 비용을 참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라. 위 '다'항의 경우 참가자는 주관사가 부담한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합의를 요청할 수 없다.
- 마. 본 조는 전시회 일정이 단일이거나 주관사의 별도 안내가 있을 경우 주관사의 안내를 우선하여 따른다.

제 9조 음향기기 사용 규제

- 가. 전시장 부스 내 음향기구(앰프 등) 사용은 제한된다. 주관사는 상황에 따라 음향기구 사용을 강제 제한 및 금지할 수 있다.

제 10조 설치 및 철거

- 가. 참가자는 주관사가 지정한 기간 및 시간 내에 배정된 부스에 전시에 필요한 설치를 완료하고 전시품을 진열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주관사는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제반 비용을 참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나. 참가자는 주관사가 지정한 기간 및 시간 내에 배정된 부스 내에 설치된 시설물 및 전시품의 철거를 완료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주관사는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제반 비용을 참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다. 본 조는 전시회 일정이 단일이거나 주관사의 별도 안내가 있을 경우 주관사의 안내를 우선하여 따른다.

제 11조 소방 규정

- 가. 장치물 및 전시장 내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불연 및 방염 처리가 되어야 한다.
- 나. 주관사는 필요에 따라 참가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2조 보충 규정

- 가. 주관사는 필요할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나.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자에게 공시되는 순간부터 참가 규정의 일부가 되며, 참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조 분쟁해결

- 가. 본 참가 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사와 참가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나. 본 참가 규정에 의한 법적 분쟁 발생 시 관할 소재지는 주관사의 소재지의 법원으로 한다.

제 14조 주관사의 의무

- 가. 주관사는 참가자가 전시를 진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시장을 유지, 관리한다.
- 나. 주관사는 참가자에게 전시에 대한 대가로 계약에서 정한 참가비 이외의 일체의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 15조 참가자의 의무

- 가. 참가자는 주관사의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2. 출품 취소 규정

- 가. 참가자의 사정에 의한 참가약정의 해지(참가 취소)는 주관사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며,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다음과 같이 해지 의사 표시 시점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고, 주관사는 해당 금액을 이미 납입된 참가비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 후 부족한 위약금은 참가약정 해지 후 1주일 이내에 참가자가 주관사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① 전시회 개최 60일 전까지 : 총 참가비의 50%
- ② 전시회 개최 30일 전까지 : 총 참가비의 70%
- ③ 전시회 개최 29일 전까지 : 총 참가비의 100%

- 나. 위 '가'항에서 발생한 계약해지 위약금은 전시회 참가 신청 이후에 발생하며, 전시회 일정과 해지의사 표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일정 비율의 위약금을 납입해야 한다.
- 다. '가'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약금의 경우, 차기 행사 참가비로 유예가 일체 불가하며 위약금 납입을 거부하는 경우 향후 1년간 전시회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 라. 주관사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및 기타 주관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않고 참가자는 주관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출품사 기본 숙지 규정

출품 신청 기업은 하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출품 신청 서류 접수 시 하기의 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출품 절차가 진행된다. 규정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출품 기업에게 있다.

가. 출품 제품 확인

와바미페어, 와바미세미나는 바람직한 특수동물의 반려문화 정착을 위하여, 특수동물을 위하여 제작된 용품, 사료 등 반려인에게 선보이는 특수동물(반려동물) 산업 박람회이다.

하기와 같이 반려문화 발전에 반하는 제품은 출품이 불가하다.

1.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등 반려동물에게 직, 간접적으로 위해가 가해질 것이라 예상되는 제품
2. 반려동물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이 사용하는 제품이 아닌 제품
3. 저작권 및 상표권 등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함이 명백하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품
4. 반려동물 그 자체의 현장 분양 및 예약 분양

5. 기타 사무국 판단 하에 반려문화 발전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제품

나. 전시장 통로 확보 협조

전시장은 단기간에 다수의 고객이 방문하는 공공 장소로, 전시장 내의 통로 및 여유 공간은 천재지변 등 사고 발생 시의 내부인의 대피 통로로 사무국과 전시장 간의 협의된 공간이므로 기업 혹은 고객이 통로 공간에 짐이나 제품을 적재하는 경우 사무국은 안전통로 확보를 위하여 이동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하는 경우, 안전을 위하여 강제조치 될 수 있다.

다. 운영 매뉴얼 준수

1. 출품이 확정된 기업에게는 전시회의 일정과 세부 운영 규정이 포함된 입점업체 가이드(매뉴얼)이 발송된다.
2. 모든 출품 기업은 해당 매뉴얼의 내용을 숙지하고 세부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사무국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출품이 취소되며, 기납부된 참가비용의 금액은 반환이 불가하다.
4. 주관사가 운영하는 전시회는 매 회차 전시회장의 위치, 규모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운영 매뉴얼의 내용 또한 상이할 수 있다. 이에 주관사는 매 행사 때마다 참가 기업에게 별도의 매뉴얼을 제공하고, 참가 기업은 참가하는 당 행사의 매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라. 재임대 및 부스 양도 불가

1. 어떤 이유로든 사전 협의 없는 부스 재임대 및 부스 양도는 절대 불가하다.
2. 재임대 및 부스 양도로 의심되는 경우, 주관사는 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양도로 최종 판정되는 경우 해당 전시회는 출품이 취소된다. 동시에 기 납부한 금액은 100% 위약금으로 처리되며, 해당 기업 양사는 향후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모든 전시에 출품이 배제될 수 있다.